

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

환불 방법 변경됩니다



변경 전

변경 후

~ 2024년 3월 31일까지

▶ 환불 방법 :

프로그램 시작 후
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,

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
대하여 **일할계산**하여 환불

2024년 4월 1일부터~

▶ 환불 방법 :

프로그램 시작 후
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,

가. 학습비
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
경우

총수업시간 1/3이
지나기 이전

→ 이미 낸 학습비의
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수업시간 1/3이 지난 후
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→ 이미 낸 학습비의
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수업시간 1/2이
지난 후

→ 반환하지 **아니함**

나. 학습비
정수기간이
1개월 초과하는
경우

반환사유가 발생한
그 달의 반환
대상 학습비
(가목에 따라 산출된
반환 대상 학습비)

+
나머지 달의
학습비
전액 합산

※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에 따라
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환불기준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규칙 [별표1]과 같이 바뀝니다!